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 제정안』

2026. 07. 21.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인도네시아	전년도 수출액 (천불)	6,993,854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할랄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에 따라 할랄 제품의 지속적인 할랄성 보장 및 표준화된 할랄제품보증(JPH)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감독 지침을 마련함
- (적용범위) HS 코드 - 전 제품*
 - * 인도네시아 시장 내 출시되는 할랄 제품에 해당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할랄제품보증(JPH) 감독의 원칙·범위·절차, 감독관의 자격·권한 및 정기·수시 감독, 보고·후속조치, 기관간 협력체계와 표준 서식을 규정
- (인증 정보) 국내기관을 통한 교차인증 가능
 - (인증 절차) 신청 주체 지정 → SIHALAL 등록 신청 → 서류 제출 → BPJPH 검증 → 비용 납부 → 등록번호 발급
 - (유효기간) 유효기간 폐지, 사후감독 대응 필요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제도에 따라 사업자의 할랄보증 시스템 운영, 정기·특별감사를 통한 인증 유지관리 체계를 운영
 - (싱가포르) MUIS 할랄인증제도 및 HalMQ에 따라 사업장별 할랄관리체계 구축, 정기심사 및 인증 유지관리 제도를 운영
 - (사우디아라비아) SFDA 및 SASO의 할랄인증제도에 따라 할랄 제품에 대한 인증관리, 시장감시 및 인증기관 관리체계를 운영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할랄인증 이후 정기·수시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SJPH 운영, 원재료 및 생산공정 관리, 감독 대응자료 준비와 시정조치 이행 등 사후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①적용 대상 여부 확인, ②SJPH 운영체계 및 관련 문서 정비, ③원재료·공급망·생산공정의 할랄성 관리 및 감독 대응자료 사전 준비, ④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등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사후감독 대응 부담) BPJPH의 정기·수시 감독에 대비하여 할랄 제품보증시스템(SJPH) 운영, 원재료·생산공정 관리 및 감독 대응자료를 지속적으로 준비·관리 등으로 운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문서 및 할랄관리체계 유지 필요) 원재료, 공급망, 생산공정 및 SJPH 운영 관련 문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후속 점검에 대비한 내부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 (중소기업) SJPH 운영 및 감독 대응
 - － (중견기업) 할랄 관리체계 고도화
 - － (대기업) 통합 할랄 컴플라이언스 구축

목 차

요약문	1
Ⅰ. 규제 개요	2
Ⅱ. 규제 세부 내용	3
Ⅲ. 관련 인증 정보	6
Ⅳ.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9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9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0
Ⅴ.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1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1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2
Ⅵ. 대응 방안	13
참고 1 참고자료	14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15
참고 3 규제원문(부속서) 번역본	23

요 약 문

규 제 명	영문	Pedoman Pengawasan Jaminan Produk Halal		
	국문	할랄 제품 보증 감독 지침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인도네시아
채택(예정)일		2025.07.31	시행현황	제정 최종안
시행(예정)일		2025.07.31	통보일(고시일)	2025.07.31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
총 수출액 (천불)		683,525,430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6,993,854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 BPJPH -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규제 목적	할랄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에 따라 할랄 제품의 지속적인 할랄성 보장 및 표준화된 할랄제품보증(JPH)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감독 지침을 마련함		
	주요 내용	할랄제품보증(JPH) 감독의 원칙·범위·절차, 감독관의 자격·권한 및 정기·수시 감독, 보고·후속조치, 기관간 협력체계와 표준 서식을 규정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관련 기업은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원재료·생산공정 등 할랄성 유지, 감독 대응자료 관리 및 BPJPH의 정기·수시 감독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할랄인증 이후 정기·수시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SJPH 운영, 원재료 및 생산공정 관리, 감독 대응자료 준비와 시정조치 이행 등 사후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대응 방안	①적용 대상 여부 확인, ②SJPH 운영체계 및 관련 문서 정비, ③원재료·공급망·생산공정의 할랄성 관리 및 감독 대응자료 사전 준비, ④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등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할랄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에 따라 할랄 제품의 지속적인 할랄성 보장 및 표준화된 할랄제품보증(JPH)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감독 지침을 마련함

* 2023년 개정된 「할랄제품보증법」에 따라 할랄 인증의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지속적인 할랄성 보장을 위한 감독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됨

□ 규제 요지

- 할랄제품보증(JPH) 감독의 원칙·범위·절차, 감독관의 자격·권한 및 정기·수시 감독, 보고·후속조치, 기관간 협력체계와 표준 서식을 규정

□ 적용대상

- (HS 코드: 전 제품) 할랄 제품*에 해당

*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공학 제품 및 착용·사용 또는 이용되는 물품 및/또는 서비스

□ 시행일

- 2025년 7월 31일

2

규제 세부 내용

□ 세부내용

- 할랄제품보증(JPH) 감독 범위
 - 제품에 대한 감독
 - 사업자에 대한 감독
 - 할랄검사기관(LPH)에 대한 감독
 - 할랄제품공정(PPH) 지원기관 및 PPH 지원인에 대한 감독
- 할랄제품보증(JPH) 감독의 종류
 - (정기감독) 매 6개월마다 1회 실시
 - (수시감독) 필요시 또는 법령 규정 위반 의심 시
- 할랄제품보증(JPH) 감독 절차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계획	감독계획 수립	• 감독의 시간·장소·대상 결정 • JPH 감독팀 구성 • 감독 대상 관련 자료·문서 분석 • 감독계획 및 필요한 행정문서 작성 • 관계 당사자에게 감독계획 통지
	감독 대상 설정	• 감독 범위 및 대상 결정 - 제품, 사업자, LPH, PPH 지원기관 및 PPH 지원인 대상
	감독 방법 결정	• 감독 방법 결정 - 정기 또는 수시감독 여부 - 직접 또는 간접 감독 방법 •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여부 및 기준을 포함
	준비자료 확보	• 감독 수행에 필요한 문서와 시설·장비를 준비 - 출장명령서, 감독 대상별 감독 도구, 시료 채취 기록서, 감독 조서 등

시행	간접 감독	• BPJPH가 관리하는 통합전자시스템에서 감독 대상 관련 문서 검사 • 또는 검색엔진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검사
	직접 감독	• 감독 대상 장소에서 현장검사를 실시 • 최초회의 → 현장검사 → 종료회의의 순서로 진행
	최초회의	• 감독관 신원 및 업무명령서 제시 • 감독 목적 설명 • 감독 대상 설명 • 준비해야 할 문서 목록 안내
	현장검사	• 감독 대상에 따라 검사 실시 • 책임자 등에 대한 면담 • 필요한 경우 제품 시료 채취 • 보유 문서와 BPJPH 통합전자시스템 자료의 검증·대조 • 사진·영상 및 현장 상황 기록
	종료회의	• 감독 결과로 확인된 사항을 감독 대상 책임자에게 설명
	감독 조서 작성	• 감독관별 조사자료와 정보를 감독 결과 문서에 기록 • 감독대상자의 의견을 받은 후 감독 결과·권고 규정·권고 사항을 포함한 감독 조서를 작성
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작성	• 감독결과를 서면보고서로 작성하여 감독부서 책임자에게 제출
	보고서 구성	• 요약, 일반현황, 감독결과, 권고사항 및 증빙자료로 구성
	감독결과 분석	• 확인된 사항을 상태·기준·원인·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
	권고사항 제시	• 확인사항의 개선, 감독결과상 미비점 보완 또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조치 등을 권고
	증빙자료 첨부	• 감독도구, 감독조서, 감독대상 관련 문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후속조치	감독결과 통보	• 감독결과 및 권고사항을 감독대상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요청
	이행상황 확인	•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개선·예방조치, 증빙자료 및 최종 후속조치 결과를 감독
	설명 요청	•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감독부서 책임자가 감독대상 책임자에게 미이행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
	추가 감독	•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입증을 위해 수시 감독을 실시 가능

○ 수시감독의 별도 절차

절차	주요 내용
신고·제보 접수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 또는 조사 결과를 접수
행정적 검토	신고자·피신고자 신원, 위반 내용, 증거, 신고기한 등을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감독팀 구성 및 계획 수립	감독팀 구성 후 수시감독 업무계획 수립
조사·검사	- 신고자, 피신고자, 증인 및 관련 당사자 소환·면담 - 문서검사 - 현장검사 - 필요 시 실험실 시험 실시
결과조서 작성	조사 또는 검사 때마다 검사결과조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의 서명을 받음
보고 및 후속조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종결, 행정위반 조치 또는 권한기관 이첩 등의 후속조치 실시

3

관련 인증 정보

□ 인증 절차

- (일반인증) 인도네시아 할랄심사원의 국내 출장에 따른 체제비(항공비 및 숙박비 등)가 발생될 수 있음

연번	단계	주요 내용
1	신청 준비	• 사업자 정보, 제품명·종류, 원재료 목록, 제조공정, 할랄관리 책임자(Penyelia Halal), SJPH 관련 문서 등을 준비
2	SIHALAL 신청	• BPJPH의 SIHALAL 시스템을 통해 할랄인증을 신청하고 심사기관인 LPH를 선택
3	서류 확인 및 비용 납부	• BPJPH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는 발급된 청구서에 따라 인증비용을 납부
4	할랄검사·시험	• 원재료, 제품, 생산시설 및 할랄제품공정(PPH)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료시험 실시
5	할랄성 결정	• LPH의 검사·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제품의 할랄 여부 결정
6	인증서 발급	• 할랄성 결정 결과를 근거로 SIHALAL을 통해 전자 할랄 인증서를 발급
7	인증 후 관리	• 사업자는 할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할랄표시를 사용하며, BPJPH의 정기·수시 감독에 대응

- (교차인증) BPJPH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내 할랄 교차 인증기관(LHLN)을 통해 해외 할랄인증서 등록(RSHLN) 가능

연번	단계	주요 내용
1	신청 주체 지정	• 인도네시아 수입자 또는 공식 대리인 지정
2	SIHALAL 등록 신청	• 수입자·대리인이 해외 할랄인증서 등록 메뉴를 통해 신청
3	서류 제출	• 위임·지정서, 수입자 NIB, 해외 할랄인증서 사본, 수입제품·HS코드 목록, 진위확인 선언서 등을 제출
4	BPJPH 검증	• BPJPH가 서류의 완전성·유효성 및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범위를 확인
5	비용 납부	• 검증 통과 후 발급된 청구서에 따라 등록비 납부
6	등록번호 발급	• 전자서명 절차 후 해외 할랄인증서 등록번호 발급

□ 사후관리

- 본 감독 지침에 따라 BPJPH는 할랄인증 제품 및 사업자 등에 대해 정기·수시 감독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추가 감독 또는 관계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수행함

□ 표시사항

-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할랄 라벨을 표시해야 함

* 할랄제품보증청 제145호(2022년) 및 이를 개정한 제88호(2023년)

구분	주요 내용
표시 대상	•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
표시 위치	• 제품 포장 또는 제품의 특정 위치에서 쉽게 확인하고 읽을 수 있는 위치
표시 형태	•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는 형태로 표시
해외 상호인정 할랄 인증 제품 (교차인증)	• 인도네시아 할랄 라벨과 해외 할랄 인증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 또는 해외 할랄기관의 할랄 라벨을 함께 표시 가능* * BPJPH와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해외 할랄기관의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
비할랄 제품	• 하람(Haram) 원료를 사용하거나 SJPH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비할랄 표시 적용

할랄 인증 라벨	할랄 인증 라벨(교차인증)
 	 

□ 신청 시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 2023년 「할랄제품보증법」 개정에 따라 할랄 인증 유효기간이 폐지, 사후 감독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됨
- (서류 보존기간) 할랄인증 관련 신청서류, 원재료 및 생산공정 자료,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 운영기록, 감독 관련 문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보관하고, BPJPH의 정기·수시 감독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원재료, 공급업체, 생산공정, 생산시설, 제품정보 또는 할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할랄 인증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추가 감독, 관계 법집행기관 이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적합성평가기관

- 인도네시아 할랄 심사 기관(해외 심사 가능)
 - － LPPOM MUI, SUCOFINDO, SURVEYOR
- 국내 교차인증 기관(해외 심사 가능)
 - － 한국할랄인증원(KHA), 한국이슬람중앙회(KMF), 비아이씨할랄코리아(BIC Halal Kore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말레이시아

- (현행 규정) JAKIM 할랄인증제도에 따라 사업자의 할랄보증시스템 운영, 정기·특별감사, 할랄표시 관리 및 인증 유지관리 체계를 운영
- (도입동향) 인증 후 사업장의 할랄관리체계 운영, 원재료·생산공정의 할랄성 유지 여부 확인 및 위험 기반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현장 감사, 공급망 관리, 인증 갱신심사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추세

2

싱가포르

- (현행 규정) MUIS 할랄인증제도와 HalMQ(Halal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사업장별 할랄관리체계 구축, 정기심사 및 인증 유지 관리 제도를 운영
- (도입동향) 인증기업의 내부 할랄관리체계 운영, 원재료 및 제조공정 변경관리, 정기 현장심사를 통한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정기 감사, 불시점검, 인증 갱신심사 및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추세

- (현행 규정) SFDA 및 SASO의 할랄인증제도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유통 할랄제품에 대한 인증 관리, 시장감시 및 인증기관 관리체계를 운영
- (도입동향) 수입 할랄제품의 적합성 확인, 시장 유통제품 사후점검, 인증기관 관리 및 위반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육류, 식품,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 검사, 시장감시, 인증 유지심사 및 위반 시 인증 정지·취소 등 사후 관리 제도를 확대하는 추세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규정	할랄제품보증법, 정부령 No. 42/2024, BPJPH청장령 70/2025	Trade Descriptions Act 2011, MHCP, MHMS	AMLA, MUIS Halal Certification Conditions, HalMQ	Saudi Halal Regulation, SFDA Halal Food Regulations 등
주관기관	BPJPH	JAKIM	MUIS	SFDA / SASO
인증 의무	법정 의무 (품목별 단계적 확대)	자발적	자발적	일부 품목 및 수입제품 중심 의무
인증 대상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식품 및 외식업 중심	식품, 육류, 화장품 등
할랄 관리체계	SJPH(할랄제품보증 시스템) 구축 의무	MHMS 기반 내부 할랄관리체계 운영	HalMQ 구축·운영	할랄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체계 운영
사후관리	정기감독 및 수시감독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정기심사 및 불시점검	시장감시 및 현장점검
유통제품 감독	BPJPH 시장감독 및 표시관리	JAKIM 시장 모니터링	MUIS 사후점검	SFDA 시장감시 및 수입검사
인증 유지요건	SJPH 운영 및 감독 결과 지속 적합성 유지	인증조건 지속 충족 및 감사 통과	HalMQ 운영 및 정기심사 통과	인증조건 유지 및 시장감시 적합
위반 시 조치	서면 경고, 행정 벌금, 인증 취소, 제품 회수	인증 정지·취소, 행정조치	인증 정지·취소	인증 정지·취소, 수입 제한, 제품 회수 등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Pedoman Pengawasan Jaminan Produk Halal
관리기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법적근거	할랄제품보증법
주요목적	할랄제품의 지속적인 할랄성 보장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정기·수시감독	BPJPH는 할랄인증 제품, 사업자, 할랄검사기관(LPH)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감독을 실시하여 JPH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함
감독계획 및 현장점검	감독 대상, 일정 및 방법 수립 후 문서검토, 현장확인, 개·폐회 회의 등을 통해 할랄제품보증(JPH) 이행 여부를 점검함
감독 대응	사업자는 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으로 할랄제품보증(JPH)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할랄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함
비차별성	역내외 차별적 요소 없음
최소무역제한성	인증 이후의 정기·수시 감독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무역 제한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판단
투명성	BPJPH 청장령을 통해 감독 절차, 감독 방법, 보고 및 후속조치 등을 공개하여 감독체계의 예측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함

○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 (직접비용) BPJPH의 정기·수시 감독에 대응하기 위해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 운영, 감독 대응자료 준비, 원재료·생산공정 관련 문서 관리 및 시정조치 이행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간접비용) 할랄제품보증(JPH) 기준의 지속적인 준수를 위해 원재료·공급망 정보, 생산기록 및 할랄관리 문서를 지속 관리하고, 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후속 대응 등 내부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결론 및 권고 사항

- (준수사항) 관련 기업은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원재료·생산공정 등 할랄성 유지, 감독 대응자료 관리 및 BPJPH의 정기·수시 감독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함
- (규제영향) 할랄인증 이후 정기·수시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SJPH 운영, 원재료 및 생산공정 관리, 감독 대응자료 준비와 시정조치 이행 등 사후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①적용 대상 여부 확인, ②SJPH 운영체계 및 관련 문서 정비, ③원재료·공급망·생산공정의 할랄성 관리 및 감독 대응자료 사전 준비, ④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등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국내외 사업자 및 할랄인증 대상에 동일한 감독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며, 특정 국가 또는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규정은 없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 없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SJPH 운영 및 감독 대응	- 적용 대상 및 감독 절차 확인 - SJPH(할랄제품보증시스템) 운영체계 정비 - 원재료·생산공정 관련 문서 및 감독 대응자료 관리 - 정기·수시 감독 대응을 위한 기본 관리체계 마련
중견 기업	할랄 관리체계 고도화	- 원재료·공급업체 변경관리 체계 구축 - 내부 할랄관리 절차 및 자체점검 운영 -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개선 프로세스 마련 - 생산공정·공급망 전반의 할랄성 관리 강화
대기업	통합 할랄 컴플라이언스 구축	- 국내외 생산거점의 SJPH 및 할랄관리체계 통합 운영 - 공급망 전반의 할랄성 검증 및 내부 감사체계 구축 - 글로벌 할랄 인증·사후감독 대응 표준화 - 계열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 참고자료

- 할랄제품보증법 (Undang-Undang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6 Tahun 2023)
- 할랄제품보증 시행에 관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42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Jaminan Produk Halal)
- 내각부처에 관한 대통령령 (Peraturan Presiden Nomor 139 Tahun 2024 tentang Penataan Tugas dan Fungsi Kementerian Negara Kabinet Merah Putih Periode Tahun 2024-2029)
- 할랄제품보증청(BPJPH)의 조직 및 업무절차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장령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 1 Tahun 2025 tentang Organisasi dan Tata Kerj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 (Keputusan 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 70 Tahun 2025 tentang Pedoman Pengawasan Jaminan Produk Halal)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증청 규정
2025년 제70호**

할랄제품보장 감독 지침에 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증청장**

고려사항(Menimbang) :

- a. 할랄제품보증 감독관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할랄제품보증 감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b. a의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장 결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Mengingat) :

1. 「2014년 제33호 할랄제품보증법」(201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295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5604호)
2. 「2023년 제6호 법률」(2022년 제2호 「고용창출에 관한 정부규정대행법률」을 법률로 제정하는 법률) (2023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41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6856호)
3. 「2024년 제42호 할랄제품보증 분야 운영에 관한 정부령」(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229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6998호)
4. 「2024년 제153호 할랄제품보증청에 관한 대통령령」(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349호)
5. 「2024년 제1호 할랄제품보증청의 조직 및 업무절차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 규정」(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933호)
6. 「2023년 제20호 할랄제품보증청장 결정」(「2021년 제57호 할랄제품보증제도 기준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장 결정」의 개정에 관한 결정)

결정한다(MEMUTUSKAN):

결정(Menetapkan):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장 결정

제1(KESATU) : 별첨 I, 별첨 II, 별첨 III 및 별첨 IV에 수록된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을 제정하며, 이는 본 결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KEDUA) : 제1에서 정한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은 JPH 감독의 수행에 있어 할랄제품보증 감독관을 위한 지침으로 한다.

제3(KETIGA) : 본 결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I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증청장 결정

2025년 제70호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에 관하여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

제1장 총칙

A. 배경

「2023년 제6호 법률」(2022년 제2호 「고용창출에 관한 정부규정대행법률」을 법률로 제정하는 법률)은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인도네시아의 할랄제품보증(JPH) 운영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기간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제품의 할랄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감독 중심의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감독 메커니즘을 제품의 할랄성 보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이 정책 변화의 주요 영향은 JPH 감독 기능의 강화로, 이는 할랄 인증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JPH 제도의 효과성은 제품이 계속하여 할랄제품보증기준(SJPH)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위험 기반 접근법의 적용과 JPH 감독관 역량 강화를 포함한 보다 역동적인 감독 방법의 개발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JPH 운영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동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감독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변화와 현장의 실무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적이고 대응성 있는 감독 지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JPH 감독 지침은 각 지역의 모든 JPH 감독관이 동일한 인식과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상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 전환은 적절한 감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과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 감독 모델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할랄 인증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JPH 감독의 철학과 접근방식을 일시적인 제도에서 보다 포괄적인 지속가능 보증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B. 목적 및 목표

1. 목적

JPH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포괄적이고 적응적이며 표준화된 감독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 JPH 감독관이 JPH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한다.
- JPH 감독의 기본 원칙을 확립한다.
- JPH 감독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JPH 감독 방법론을 제공한다.
- JPH 감독 수행에 있어 BPJPH,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C. 대상

- BPJPH
-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

3. JPH 감독관

D.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별첨 I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 정의

제3장 JPH 감독

제4장 JPH 감독관

제5장 모니터링 및 평가

제6장 부칙

2. 별첨 II 정기 감독

A. 제품에 대한 감독

B. 사업자에 대한 감독

C. 할랄검사기관에 대한 감독

D. 할랄제품공정지원기관 및 할랄제품공정지원인에 대한 감독

3. 별첨 III 수시 감독

4. 별첨 IV 공문서 작성 양식

제2장 일반 정의

본 결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랄제품보증청(이하 BPJPH)이란 JPH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할랄제품보증(이하 JPH)이란 할랄 인증서로 입증되는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말한다.
3. JPH 감독관이란 JPH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임명한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4. 제품이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공학 제품 및 착용·사용 또는 이용되는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할랄제품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할랄로 선언된 제품을 말한다.
6. 할랄제품공정(이하 PPH)이란 원재료의 제공, 가공, 보관, 포장, 유통, 판매 및 제품의 제공을 포함하여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사업자란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형태의 사업체와 법인이 아닌 사업체를 말한다.
8. 할랄 인증서란 MUI, 주(Provinsi) MUI, 군·시(Kabupaten/Kota) MUI, 아체 올라마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Ulama Aceh) 또는 할랄제품 파트와의 할랄성 판정에 근거하여 할랄제품보증청이 발급하는 제품의 할랄성 증명서를 말한다.
9. 할랄 라벨이란 제품의 할랄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10. 할랄검사기관(이하 LPH)이란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검사 및/또는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할랄 감사인이란 제품의 할랄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2. 국가공무원(이하 ASN)이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정부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직원을 위한 직업을 말한다.

제3장 JPH 감독

A. 감독 원칙

JPH 감독 원칙은 JPH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다음과 같다.

1. 독립성, 즉 법령에 반하는 어떠한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되어야 한다.
2. 객관성, 즉 편향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되며, 개인의 의견이나 견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투명한 책무성, 즉 JPH 감독은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최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4. 효과성 및 효율성, 즉 목표 달성을 지향하여 적절하고 유용하며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신속하고 간소하며 비용이 저렴하거나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전문성, 즉 역량과 윤리강령에 기반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B. JPH 감독 범위

JPH 감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에 대한 감독
2. 사업자에 대한 감독
3. LPH에 대한 감독
4. PPH 지원기관 및 PPH 지원인에 대한 감독

C. JPH 감독의 종류

1. JPH 감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a. 정기 감독; 및/또는
 - b. 수시 감독.
2. 정기 JPH 감독
 - a. 정기 JPH 감독은 JPH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매 6개월마다 1회 실시한다.
 - b. 정기 감독의 실시 범위는 JPH 감독 범위에 따른다.
3. 수시 JPH 감독
 - a. 수시 JPH 감독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및/또는
 - b. 법령의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실시한다.

D. 감독 단계

JPH 감독은 다음 단계에 따라 실시한다:

1. 계획
2. 시행
3. 보고
4. 후속조치

1. 계획

- a. JPH 감독은 BPJPH,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가 JPH 감독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b. JPH 감독 업무계획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JPH 감독부서 업무계획; 및
 - 2) JPH 감독관 업무계획.

c. JPH 감독부서 업무계획

- 1) 업무계획은 BPJPH,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의 감독 분야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립한다.
- 2) 업무계획은 JPH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서식 1에 따라 매년 작성한다.
- 3) 업무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JPH 감독 프로그램명
 - b) JPH 감독 범위
 - c) JPH 감독 대상
 - d) JPH 감독 장소
 - e) JPH 감독 종류
 - f) JPH 감독팀
 - g) 시료 채취; 및
 - h) 예산
- 4) 수시 JPH 감독의 경우, 업무계획은 필요에 따라 및/또는 법령의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을 근거로 수립한다.
 - a) 조사 결과
 - b) 신고
 - c) 인쇄매체, 전자매체 및 기타 매체를 통한 정보; 및/또는
 - d) JPH에 관한 기타 정보

d. JPH 감독관 업무계획

- 1) 감독관 업무계획은 JPH 감독관이 JPH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작성한다.
- 2) 감독관 업무계획은 감독 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계획을 근거로, 우선 순위와 위험분석을 고려하여 매월 서식 2에 따라 작성한다.
- 3) 감독관 업무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JPH 감독 목적
 - b) JPH 감독 범위
 - c) JPH 감독 대상
 - d) JPH 감독 일정
 - e) JPH 감독 장소
 - f) JPH 감독 종류
 - g) JPH 감독 방법
 - h) 시료 채취
 - i) JPH 감독팀 구성; 및
 - j) 예산

2. 시행

- a. JPH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부서의 장은 JPH 감독관을 지정한다.
- b. JPH 감독관은 JPH 감독 업무계획에 따라 JPH 감독을 수행하며, JPH 감독의 임무와 원칙을 준수한다.
- c. JPH 감독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JPH 감독을 수행한다.

3. 보고

- a. JPH 감독 보고서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JPH 감독 결과보고서; 및

2) 감독 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보고서.

b. JPH 감독 결과보고서

1) JPH 감독 결과보고서는 JPH 감독관이 작성한다.

2) JPH 감독관은 감독 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3) JPH 감독 결과는 서식 3에 따라 요약되며, 분기별로 실시한다.

c. 감독 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보고서

1) 각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 주·군·시 지방정부의 감독 분야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2) 감독 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보고서는 각각의 관계 부처 장관, 관계 기관장 및 주지사·군수·시장에게 제출한다.

3) 관계 부처 장관, 관계 기관장 및 주지사·군수·시장에게 제출되는 것 외에도, 해당 보고서는 JPH 감독 수행의 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감독 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BPJPH 청장에게 제출한다.

4. 후속조치

a. BPJPH는 JPH 감독 결과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한다.

b. JPH 감독 결과 JPH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BPJPH의 감독 분야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JPH 위반 의심의 유형을 결정한다. 위반 의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위반; 또는

2) 범죄행위.

c. 행정위반에 대한 후속조치는 본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d.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법집행기관에 이첩한다.

E. JPH 감독 수행에 관한 협력

1. JPH 감독 수행에 관한 협력의 목적은 협력을 강화하고 JPH 감독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며, JPH 감독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2. BPJPH는 JPH 감독 수행에 있어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 주·군·시 지방정부와 협력한다.

3. JPH 감독은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 주·군·시 지방정부가 각각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4.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는 각각의 권한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JPH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5. 제2호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a. JPH 감독의 전략 프로그램을 검토 및/또는 수립한다.

b. 각 기관의 권한에 따라 공동으로 JPH 감독 수행을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및/또는

c. 위반 의심 사항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6. 제5호 c.목의 JPH 감독 수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a. 정기적으로.

b.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및/또는

c.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7. 제5호 c.목의 협력에서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가 발견한 위반 의심 사항은, 감독 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BPJPH 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면 권고를 통하여 보고한다.

제4장

JPH 감독관

A. 자격요건

1. JPH 감독은 BPJPH,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의 JPH 감독관이 수행한다.
2. JPH 감독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BPJPH,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임명한다.
3. BPJPH,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임명하는 JPH 감독관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JPH 감독관 기능직을 수행하는 ASN; 또는
 - b. JPH 감독관으로 지정된 ASN.
4.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임명하는 JPH 감독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이슬람교를 신봉할 것.
 - b. 감독 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일 것.
 - c. 최소 학사(Strata 1) 학위를 보유할 것.
 - d. 이슬람 율법에 따른 제품의 할랄성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보유할 것.
 - e. JPH 감독관 교육을 이수할 것.
5.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임명하는 JPH 감독관의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는 최소한 다음과 같다.
 - a. 주민등록증.
 - b. ASN으로서의 최종 직위 임명결정서 사본.
 - c. 학위증 사본.
 - d. 징계처분을 받고 있지 아니하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진술서.
 - e. 정부 의사 또는 공공병원이 발급한 신체 및 정신 건강진단서.
 - f. JPH 감독관 교육 수료증.

B. JPH 감독관 임명

1. JPH 감독 기능직에 종사하는 ASN 출신 JPH 감독관의 임명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 BPJPH,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JPH 감독관이 없는 경우에는, BPJPH, 관계 부처, 관계 기관 및/또는 주·군·시 지방정부는 소속 ASN을 JPH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JPH 감독관으로 지정된 ASN은 지정일부터 최장 1년 이내에 JPH 감독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천되어야 한다.

C. JPH 감독관의 해임

JPH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사직한 경우
3. ASN 직위에서 일시 해임된 경우
4. 국가의 부담이 아닌 휴직 중인 경우
5. 6개월을 초과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및/또는
6. 감독 대상과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D. JPH 감독관의 임무, 의무 및 권한

1. JPH 감독관의 임무는 JPH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JPH 감독관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a. 감독계획을 수립한다.
 - b. 문서검사 및/또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 c. 현장검사 시 임무수행명령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다.
 - d. 감독 결과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
 - e. JPH 감독 결과에 대한 권고를 작성한다.
 - f. JPH 감독 결과와 JPH 감독 수행에 대한 평가를 보고한다.
 - g. JPH 감독 결과의 기밀을 유지한다.
3.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JPH 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JPH 감독 활동과 관련된 사진, 음성, 오디오 및/또는 영상과 기타 문서를 포함한 자료, 정보 및/또는 문서를 검사 및/또는 수집한다.
 - b. PPH와 관련된 생산시설 또는 기타 시설에 출입한다.
 - c. PPH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d. 원재료 및/또는 제품의 시료를 채취한다.
 - e. JPH 감독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한다. 및/또는
 - f. JPH 감독 결과에 대한 권고를 한다.

제5장 모니터링 및 평가

A. 모니터링

1. 업무부서의 장은 감독 활동이 수립된 업무부서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감독 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의 장은 JPH 감독의 목표 및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의 관계 부처 장관, 관계 기관장 및 주지사·군수·시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3. 업무부서의 장은 계획된 활동이 JPH 감독의 목표 및 감독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JPH 감독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B. 평가

1. 업무부서의 장은 정해진 지표에 따라 JPH 감독 수행의 성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업무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서식 4에 따른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한다.

제6장 부칙

1. 본 JPH 감독 지침은 JPH 감독 수행을 위한 지침으로 제정한다.
2. 본 지침은 동적인 성격을 가지며, JPH 규정의 발전과 JPH 감독 수행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보다 상세한 절차 및 지침은 차관 결정 또는 제1급 조직단위(Unit Organisasi Eselon I) 책임자의 결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참고 3

규제원문(부속서) 번역본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기 서식목록은 규제원문상 부속서에 포함된 서식에 대한 목록으로,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목록 할랄제품보증 감독

서식	내용	서명자
서식 1	JPH 감독부서 업무계획	업무부서의 장
서식 2	JPH 감독관 업무계획	JPH 감독관 업무부서의 장
서식 3	JPH 감독 결과 종합보고서	JPH 감독관 업무부서의 장
서식 4	업무부서 성과보고서	업무부서의 장

정기 감독 서식 목록

감독 단계	서식	내용	서명자
계획	서식 1	할랄제품보증 감독계획	JPH 감독관
	서식 2	JPH 감독계획 통지	업무부서의 장
시행	서식 3	검사 결과 문서	JPH 감독관
	서식 4	JPH 감독 결과 조서	JPH 감독팀 JPH 감독 담당자(감독 범위에 따름)
보고	서식 5	JPH 감독 결과보고서	JPH 감독관
후속조치	서식 6	JPH 감독 결과 전달 공문	업무부서의 장
	서식 7	JPH 감독 후속조치 모니터링	JPH 감독팀 JPH 감독 담당자(감독 범위에 따름)
	서식 8	설명 요청 공문	업무부서의 장

수시 감독 서식 목록

감독 단계	서식	내용	서명자
계획	서식 1	JPH 위반 의심 신고서	신고인
	서식 2	조사 결과서	JPH 감독관
시행	서식 3	신고 및/또는 조사 결과 검토서	JPH 감독관 업무부서의 장
	서식 4	수시 JPH 감독 업무계획	JPH 감독팀
	서식 5	검사 결과 조서	JPH 감독팀 검사 대상자
	서식 6	서명 거부 조서	JPH 감독팀
보고	서식 7	JPH 감독 결과보고서	JPH 감독팀
후속조치	서식 8	JPH 감독 후속조치 모니터링	JPH 감독관 업무부서의 장
	서식 9	설명 요청서	업무부서의 장
	서식 10	보고 종결 조서	JPH 감독관 업무부서의 장